남양주우체국 공고 제2022-42호

2022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(상시계약집배원)

최종 합격자 공고

2022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 상시계약집배원 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30일

남양주우체국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합격판정	비고
남양주001	합 격	

2. 최종 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기간 : 2022. 8.30.(화) ~ 31.(수) 09:00~18:00

※ 토,일요일제외, 점심시간 제외 11:30~12:30

나. 등록방법 :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해당 등록장소에 방문하여 등록

다. 등록장소

등 록 처	주 소	전화번호
남양주우체국 지원과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88(평내동) 3층	031-590-0774

3. 제출서류

1. 기본증명서(상세) 2통**(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)**
2. 주민등록 초본(상세) 1통**(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,**
   반드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)
3.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및 사진 1매
4. 운전경력증명서 1통**(전체경력 발급, 발급일자 및 법규위반사항 포함)**
5.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
   - **가입보험금 : 2,000만원 / 가입기간 : 2022.9.1.~ 2023.8.31.(1년))**
   - 직종:상시계약집배원
   - 피보험자 : 남양주우체국(132-83-05284)
   - 특별약관 추가(3가지) :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(Ⅰ), 추가위험담특별약관(Ⅱ),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 특별약관
6. **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」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통** [서식1]
   ※ 관련 규정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신양식으로 발급할 것
7. 주민등록등본 1통(배우자 및 직계비속 해당자 한,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)
8. 경력증명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9.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10. 취업지원대상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,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각 1부(해당자 한)

4. 유의사항

가.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, 임용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[서식2]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타 최종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문의는 최종합격자 등록장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1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남양주우체국	상시계약집배원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	체 중	kg	
허리둘레	cm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

전문의 소견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시험실시기관		③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② 응시직명		④ 주민등록번호	-	

응시자의 질환명	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	※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,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전문의 (서명 또는 인)

※ 소속 병원명 : (☏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,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을 적어야 합니다.

[전문의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위 소견서는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   -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3호서식]

(앞쪽)

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 직명	④ 응시 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-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(재신체검사 결과 등)	

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분야 전문의) (서명 또는 인)

신체검사 판정결과	[ ]합 격 [ ]불 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
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
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,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
2. “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” 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.

- (작성 예시)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

3. “신체검사 판정결과” 란에는 신체검사서(별지 제1호서식)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, 불합격,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.

가. 합격 사유(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) 기재의 예

-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
-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
-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
-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,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,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

※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,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.

다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
-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참 고 **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및 검사서**

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(제4조 관련)

1. 일반결함
  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   나. 고혈압성 응급증
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3. 흉부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
4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
5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
6. 생식비뇨기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
7. 내분비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
8. 혈액 또는 조혈 계통
 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
9. 신경 계통
  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: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,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   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      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      2) 외상성 신경질환
      3) 말초신경질환
      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      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      6) 뇌전증(腦電症)(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 업무로 한정한다)

10. 팔다리

가.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(어깨·팔·손) 장애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

11. 귀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

12. 눈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, 시야 장애,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

13. 정신 계통

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

나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

[서식2]

임 용 포 기 서

▸ **시험구분 :** 2022년 제10회 공무직 근로자(상시계약집배원)

▸ **직　　종 :** 공무직근로자(상시계약집배원) ▸ **응시번호 :**

▸ **성　　명 :** ▸ **생년월일 :**

▸ **주　　소 :**

(우편번호)

▸ **전화번호 :** (일반전화) (휴대전화)

위 본인은 ( )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(농어촌소포배달원)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 자 : 2022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/인)

남양주우체국장 귀하

※ 이 서식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의 **임용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**합니다.
※ 포기사유(타 시험 합격, 학업계속, 질병, 가사형편 등)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소·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,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성명 옆에는 **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